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2. 26 선고 2019가단356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1. 22.

판결 선고 2021. 2. 26.

주 문

1. 피고와 D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9. 3. 13. 접수 제49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D의 연대보증 하에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76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은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59,648,3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의 모친 G는 2009. 12. 1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H, I, D, J(망인의 사망 이후 2009. 1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K이 있다), 피고, L(이하 '피고 등'이라한다)이 각 1/6지분씩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D과 피고 등은 2019. 3.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개별공시지가 기준3,511,200원 + 2,963,100원), 보령시 M 중 2148.67/27372지분(2,836,244원), 현대 5톤트럭 2대(각 50만 원 상당), 세레스 4륜구동 덤프(22만 원 상당) 코란도 디젤-웨미리9(15만 원 상당)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 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5다254675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 160,690,544원,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359,648,372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분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시기, D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D이 희귀병이 있어 피고가 D 대신 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 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0. 선고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보령시 / 전 / 684 m²

2. 충청남도 보령시 / 전 / 1494 m²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원인은 '2009.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19. 3. 11. 작성되었고, 2019. 3. 13.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 등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2019. 3. 11.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